

수 신 : 정회원사

참 조 :

제 목 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 의견조회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이 발의(장종태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0386)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. 8.18.(화)까지 사무처로 의견 제출(FAX 032-428-7334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□ 개정(안) 주요내용

-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부령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(안 제39조 제2항 및 제4항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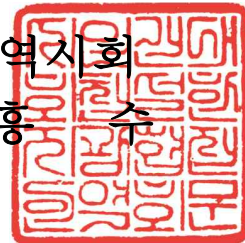
○ 제출양식 (※ 붙임 파일 참조)

개정(안)	검토의견	사 유

- 붙 임 1.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.
2.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

※ 붙임 문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(incheon.kosca.or.kr) - 협회공문 참조바랍니다.

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
회 장 조 홍 수



담당자 사원 최현탁 부장 계박사

시행 전건협 인천 제657호(2026. 8.11)

우 21574/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(구월동, 전문건설회관)/ <http://incheon.kosca.or.kr>

전화 032-428-7331 / 전송 032-428-7334 / 전자우편 qrt9373@kosca.or.kr